

제주지방법원 2021. 2. 8 선고 2020가단365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

변론 종결 2020. 12. 21

판결 선고 2021. 2. 8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3021㎡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에 관하여 2007.2. 16. 접수 제149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등기'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0. 4. 12. D 명의로 1973. 4. 5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, 2007. 2. 16. 피고 명의로 2007. 2. 15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D은 이 사건 등기로부터 11년이 지난 2018. 10. 10. 사망하였고, 상속인으로 자 녀인 원고가 있다.

다. D의 배우자 E(1951 년경 사망)의 남동생 F의 아들이 피고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내지 7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증인 G의 증 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D은 자녀로 딸인 원고만을 두고 있어, 자신의 사망 후에 남편과 자신의 기일제사 및 분묘 벌초, 정월 및 추석 명절 등을 누가 해줄 것인지를 걱정하다가 음력 2006 . 12.13. 남편 E의 제삿날에 가까운 친족인 피고에게 남편과 자신의 기일제사 및 분묘 벌초, 정월 및 추석 명절 제사를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.

그러나 D이 사망한 후 피고는 E와 D의 기일제사, 분묘 벌초, 정월 및 추석 명절 제사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.

원고는 D의 상속인으로서 2020. 9. 17.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계약이 부담부 또는 조건부 증여계약이었다는 점이나 피고가 그 부담 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방선옥